



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 제도 알아보기



Q1
...

공직자의 이해충돌이란 무엇인가요?

?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에 자신의 사적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을 말합니다.



Q2 ...

이해충돌방지법 적용대상은 어떻게 될까요?

공무원, 공직유관단체 및 공공기관의
임직원, 국공립학교 교직원, 공무수행
사인, 그 밖에 법률에 따라 공무원으로
인정된 사람 등에게 적용됩니다.



Q3

...

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주요내용은?

공직자의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한 사익추구를 예방할 수 있도록 공직자가 해야할 5개 신고·제출 의무와 하지 말아야 할 5개의 제한 및 금지행위 등 총 10개의 행위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.





공직자가 해야 할 신고·제출 의무 5가지

1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

공직자는 수행중인 직무와 관련이 있는 사적이해관계자를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, 직무관련자는 해당 공직자에 대해 기피 신청

2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·매수 신고

부동산을 직접 취득하거나 부동산 개발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의 공직자와 그 배우자,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등이 업무와 관련된 부동산을 보유·매수하는 경우 신고

3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

공직자는 신고대상자(본인, 배우자, 직계존속·비속, 특수관계사업자 등)가 공직자의 직무관련자와 사적 거래를 한다는 것을 알았을 경우, 그 사실을 신고

4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

공직자는 직무관련자인 퇴직 후 2년 이내 소속기관의 퇴직자와 사적 접촉(골프, 여행, 사행성 오락)을 하는 경우 신고

5 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

고위공직자는 3년 이내 민간부문 활동내역을 임용·임기를 개시한 날부터 30일 이내 제출

공직자가 하지 말아야 할 제한·금지 행위 5가지

1

직무 관련 외부활동의 제한

공직자의 직무수행 과정에서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직무 관련 외부활동 금지

2

가족 채용 제한

공개채용을 거치지 않고 소속 고위공직자 및 채용업무 담당자 등의 가족 채용 금지

3

수익계약 체결 제한

고위공직자, 계약업무담당자 등의 가족, 그들이 대표자인 법인·단체 등과 수익 계약 체결 금지

4

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·수익금지

공직자는 공공기관 물품 등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·수익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사용·수익하게 하는 행위 금지

5

직무상 비밀 또는 미공개 정보 이용 금지

- 직무상 비밀 또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는 행위 금지
- 직무상 비밀 또는 미공개 정보를 사적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는 행위 금지